
VI. 결론

우리나라의 금융·보험세제 설계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으며,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과세제도에 충실하려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과세 설계에 있어 복잡한 금융상품 과세에 대한 일관성 있는 과세를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확대, 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 등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대원칙에 부합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도입 및 강화는 모든 소득을 동일하게 다루어 동일한 규모의 소득이 동일하게 과세되도록 하여 과세의 형평성 및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금융·보험과세제도를 분석하고 이를 해외사례와 비교·분석해본 결과 우리나라 및 세계의 금융상품은 빠르게 발전 및 복잡화되고 있는데 반해 과세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해 금융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과세 논리상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금융세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금융투자상품 투자 시 투자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주식에 직접투자 시에는 자본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증권거래세는 납부하게 되는데, 이는 손실 시에도 과세가 발생하여 응능과세 원칙과 위배되는 문제가 있으며 또한 펀드 등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상장주식 과세제외로 인해 자본이익과 이자·배당소득 간의 손익 통산이 되지 않아 투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채권투자 이익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져 과세의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상장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는 과거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시절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 적용되었으나, 금융시장이 발달하고, 집합투자기구

등 다양한 금융상품이 공급되는 현재에는 상장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인해 소득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과세가 되지 않는다거나 반대로 집합투자기구 등 복합 금융상품에서 과세제외됨으로 인해 투자 손실 발생 시에도 과세가 이루어지는 등 납세자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복잡하고 상식과 배치되는 조세제도는 국민의 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는 등 동 제도로 인한 편익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큰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해외사례를 살펴본 결과 금융선진국들은 대부분 주식매매차익 등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와 손익의 통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8년까지 자본손실에 대한 이월공제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주식거래세는 대부분의 선진국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중·장기적인 금융소득과세 개혁을 통해 주식거래차익에 대해 과세하면서 손익 통산을 허용하고 대부분 금융소득에 대한 세율을 20%로 통일하여 금융세제를 단순화·합리화하였다.

따라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의 보편적 원칙 실현과 복잡한 금융상품 과세를 단순화하여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금융세제 설계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와 손익 통산 그리고 주식거래세 폐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주식양도차익 과세 및 거래세 폐지 그리고 금융세제 단순화를 위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개혁을 추진한 일본의 사례는 금융세제 선진화의 좋은 참고 사례가 될 것이다.

보험세제의 경우 국가 간 금융·보험과세의 특징을 비교해 볼 때 조사대상 국가들은 생명보험 등 보장성보험금 수령 시 보험금에는 과세를 하지 않으나 법정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미국, 영국 등은 배우자 상속 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일본의 경우 남은 가족들의 경제적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본연의 기능을 고려하여 보험금에 대한 별도의 상속공제가 존재하나 우리나라는 생명보험금 상속에 대한 별도의 공제항목 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배우자 등 상속자와의 관계에서 오는 특수성 혹은 위험보장을 위한 안전장치로서 사망보험금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 역시 사망위험보장이라는 보험의 특수성을 고려한 세법상의 배려가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된다.

연금세제의 경우 우리나라의 3층 노후소득보장제도는 해외에서도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단, 세계적으로 납입단계에서의 세제혜택을 세액공제로 제공하는 나라는 매우 드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세액공제의 제도상 특징으로 인해 우리나라 연금세제는 EET보다는 부분적 EET 혹은 TET 제도로 변형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제도의 효과 측면에서 세액공제는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연금 가입 유인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사적연금가입이 필요한 계층에게 충분한 연금가입유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중산층 및 저소득층 연금가입유인을 증대하기 위해 2015년부터는 연소득 5,500만 원 이하 소득자에 대해서는 연금저축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5%로 확대되었는데, 정책시행 이후 연금저축 가입 및 납입추이를 살펴보고 후속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노후 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사적연금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은 큰 것으로 판단되나 사적연금의 세제혜택 한도는 영국, 미국 등 여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이나 영국, 독일의 경우처럼 세제상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게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한, 퇴직연금 등 적립자산의 연금화 수령비율이 3% 수준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할 때, 영국에서 시행되었던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화 수령의무화 도입은 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기능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보험의 역할과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보편적이고 합리적이며 우리나라의 특징을 충분히 반영한 금융·보험세제의 도입 및 설계는 우리 금융이 변화하는 산업 및 인구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